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1844호
2020년 7월 23일(목)

차 례

【 고 시 】

-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대경대학교 진입도로 종로2-234호선]----- 1
-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2
-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 내용고시[별내동]----- 9

【 공 고 】

- 지금.도농 6-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19
- 화도푸른물센터 증설 및 수질강화를 위한 개선 민간투자사업 전락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20
- 영빈묘 인근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안) 주민공람공고 (소로2-263호선,2-264호선)----- 21
- 남양주 호평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공고----- 22
-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3
-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공고[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 건설공사, 남양주시5차]----- 31
- 도로지정공고[와부읍]----- 32
- 도로지정공고[진접읍]----- 33
- 도로지정공고[진접읍]----- 34
- 도로지정공고[화도읍]----- 35
-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고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화도읍]----- 36
- 도로지정(변경)공고[호평동]----- 37
- 도로지정(변경)공고[호평동]----- 38
- 도로지정(변경)공고[호평동]----- 39
- 도로지정(변경)공고[호평동]----- 40
- 도로지정(변경)공고[호평동]----- 41
- 도로지정(변경)공고[호평동]----- 42
- 도로지정(변경)공고[호평동]----- 43
- 도로지정(변경)공고[호평동]----- 44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양주시 편집 : 홍보기획관

<input type="checkbox"/>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금곡동]-----	45
<input type="checkbox"/> 도로점용허가 내용공고[다산1동]-----	48
<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별내동]-----	52
<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별내동]-----	53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292호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고시 [대경대학교 진입도로 중로2-234호선]

1. 우리시 진접읍 팔야리 232-1번지 일원에 대경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남양주시고시 제2017-43호(2017.02.09.), 제2018-13호(2018.01.04.), 제2018-242호(2018.05.31.), 제2018-555호(2018.12.20.), 제2019-285호(2019.06.27.) 및 제2020-250호(2020.06.25.)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장

1.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경미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중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234	16	국지 도로	252	중로3-227호선 (팔야리828-7)	대경대학교 입구경계 (팔야리232-21)	일반 도로	-	남양주시고시 제2016-147호 (2016.6.16)	A=4,144
변경	중로	2	234	16	국지 도로	252	팔야리 828-7	팔야리 232-21	일반 도로			A=4,146.5

나) (경미한 변경)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234	중로 2-234	○ 변경 - A = 4,144m ² → 4,416.5m ²	○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2.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계재는 생략). 끝.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293호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남양주시 평내동 191번지 일원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고시 제 2020-280호(2020.7.2.)로 고시한 내용 중 기반시설(도로)와 관련하여 기재 착오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내용을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7. 23.

남양주시장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① 평내지구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정정사항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14	평내지구	평내동 191번지 일원	59,813.7	감)9.1	59,804.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4	평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계 변경(감 9.1㎡) : 59,813.7㎡ → 59,80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량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남양주고시 제2016-363(2016.12.30.)호로 기 결정된 중로1-224호선 폐지 및 소로평 내2-3호선 변경(연장확대)에 따른 중로 2-225호선과 연결을 위한 일부 선형변경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정정사항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9,813.7	감)9.1	59,804.6	100.0	
주거 지역	소 계	51,170.8	-	51,170.8	85.6	
	제1종일반주거지역	1,246.8	-	1,246.8	2.1	
	제2종일반주거지역	49,134.7	-	49,134.7	82.2	
	준주거지역	789.3	-	789.3	1.3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8,642.9	감)9.1	8,633.8	14.4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평내동 191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감)9.1	100% 이하	• 측량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정정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정정

1) 도로 결정조서(당초)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중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56	주간선 도로	24,736 (189)	도농동 255	화도읍 구암리 산28-4	일반 도로	도농동 호평농 호평농	경고233호 (78.5.25)	
기정	중로	1	769	20	집산 도로	221	소로1-51	대로1-1	일반 도로	-	-	
변경	중로	1	769	20	집산 도로	221	대로1-1	소로 평내1-3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225	15	집산 도로	680	평내동 461-4	평내동 123-13	일반 도로	호만천	경고91호 (95.3.28)	
기정	소로	평내 1	2	10	국지 도로	200 (5)	평내동 268-5	평내동 213	일반 도로	-	미고27호 (93.12.29)	착 오 정 정
기정	소로	평내 1	3	10	국지 도로	89	소로2-111	중로 1-769	일반 도로	-	미고27호 (93.12.29)	
변경	소로	평내 1	3	10	국지 도로	89	중로 1-769	소로 평내2-3	일반 도로	-	미고27호 (93.12.29)	

※()는 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당초)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769	중로1-7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점 시설번호 변경 - 기정 : 소로1-51 - 변경 : 소로평내1-3 기점 변경 - 기정 : 소로1-51 - 변경 : 대로1-1 종점 변경 - 기정 : 대로1-1 - 변경 : 소로평내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양주시 고시 제2003-107 (2003.10.6.)호로 변경된 시설 번호 반영 기종점 상호간 위치 오기
소로평내1-2	소로평내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 누락분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양주시 고시 제2010-183 (2010.9.3.)호 결정 시 누락분 반영
소로평내1-3	소로평내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점 시설번호 변경 - 기정 : 소로2-111 - 변경 : 소로평내2-3 기점 변경 - 기정 : 소로2-111 - 변경 : 중로1-769 종점 변경 - 기정 : 중로1-769 - 변경 : 소로평내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양주시 고시 제2003-107 (2003.10.6.)호로 변경된 시설 번호 반영 기종점 상호간 위치 오기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1) 도로 결정조서(정정)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중 경 과 지	최 결 정 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 (m)								
기정	대로	1	1	35~56	주간선 도로	24,736 (189)	도농동 255	화도읍 구암리 산28-4	일반 도로	도농, 금곡, 호평동	경고233호 (78.5.25)	
변경	대로	1	1	35~56	주간선 도로	24,736 (189)	도농동 255	화도읍 구암리 산28-4	일반 도로	도농, 금곡, 호평동	경고233호 (78.5.25)	일부구간 선형/경 면적변경
기정	중로	1	769	20	집산 도로	221	소로1-51	대로1-1	일반 도로	-	-	
변경	중로	1	769	20	집산 도로	221	대로1-1	소로 평내1-3	일반 도로	-	-	기종점 및 일부구간 선형/경 면적변경
기정	중로	2	225	15	집산 도로	680	평내동 461-4	평내동 123-13	일반 도로	호만천	경고91호 (95.3.28)	
변경	중로	2	225	15	집산 도로	680	평내동 461-4	평내동 123-13	일반 도로	호만천	경고91호 (95.3.28)	일부구간 선형/경 면적변경
기정	소로	평내 1	2	10	국지 도로	200 (5)	평내동 268-5	평내동 213	일반 도로	-	미고27호 (93.12.29)	
변경	소로	평내 1	2	10	국지 도로	200 (5)	평내동 268-5	평내동 213	일반 도로	-	미고27호 (93.12.29)	착오정정 및 일부구간 선형/경 면적변경
기정	소로	평내 1	3	10	국지 도로	89	소로2-111	중로 1-769	일반 도로	-	미고27호 (93.12.29)	
변경	소로	평내 1	3	10	국지 도로	89	중로 1-769	소로 평내2-3	일반 도로	-	미고27호 (93.12.29)	기종점 및 일부구간 선형/경 면적변경

※()는 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호	대로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구간 선형 및 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량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중로1-769	중로1-7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점 시설번호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 : 소로1-51 - 변경 : 소로평내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양주시 고시 제2003-107 (2003.10.6.)호로 변경된 시설 번호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 : 소로1-51 - 변경 : 대로1-1 종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 : 대로1-1 - 변경 : 소로평내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종점 상호간 위치 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구간 선형 및 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량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중로2-225	중로2-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구간 선형 및 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 선형 변경 및 측량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소로평내1-2	소로평내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 누락분 표기 • 일부 구간 선형 및 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시 고시 제2010-183 (2010.9.3.)호 결정 시 누락분 반영 • 소로평내1-3 선형 변경사항 반영
소로평내1-3	소로평내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점 시설번호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 : 소로2-111 - 변경 : 소로평내2-3 • 기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 : 소로2-111 - 변경 : 종로1-769 • 종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 : 종로1-769 - 변경 : 소로평내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시 고시 제2003-107 (2003.10.6.)호로 변경된 시설 번호 반영 • 기종점 상호간 위치 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구간 선형 및 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량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2) 공원 결정(변경)조서 - 정정사항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소공원	평내동 212-3번지 일원	1,785.7	감)35.1	1,750.6	남양주고시 제2010-183호 (2010.9.3)	
변경	1	공원	수변공원	평내동 192-1번지 일원	4,710.2	감)13.2	4,697.0	남양주고시 제2010-183호 (2010.9.3)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결 정 사 유
1	공 원 (소공원)	• 면적변경(감 35.1) : 1,785.7m ² → 1,750.6m ²	• 측량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1	공 원 (수변공원)	• 면적변경(감 13.2m ²) : 4,710.2m ² → 4,697.0m ²	• 측량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3) 녹지 결정(변경)조서 - 정정사항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13	녹지	연결녹지	평내동 210-1번지 일원	906	감)2.5	903.5	남양주고시 제2015-324호 (2015.12.10)	

○ 녹지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결 정 사 유
313	녹 지 (연결녹지)	• 면적변경(감 2.5m ²) : 906m ² → 903.5m ²	• 측량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정정사항 없음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m ²)	
계		37,101.7	-	37,101.7	
A1	-1	12,655.1	-1 (평내동 210-2번지 일원)	12,655.1	공동주택 (아파트)
A1	-2	24,446.6	-2 (평내동 191번지 일원)	24,446.6	공동주택 (아파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정정사항 없음

가구번호	위 치 (획 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1, -2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 지자체장이 요구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말함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최고 32층 이하		
		배 치	• 획일적인 평형배치를 지양하고 판상형 및 탑상형 혼합배치. 단, 판상형의 경우 4호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50미터이하로 계획		
		형 태	지붕	• 주변경관 및 단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디자인 가능	
			외벽	• 자연환경요소와의 경합을 피하고, 조화를 도모하는 환경친화적 재료 사용	
			출입구	• 건축물 테마에 부합되는 개성있는 입면디자인으로 식별성 향상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1-769호선 경계부 건축한계선 : 6m (근린생활시설 전면부 제외) • 중로2-225호선 경계부 건축한계선 : 10m(2BL) • 부지경계 건축한계선 : 3m 				
조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 상부의 옥탑구조물 등에 설치하는 투광조명은 배제 • 단지 주,부출입구 장식물에 주광색 투광기를 상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의 위치확인 및 이미지를 전달 • 단지 내부 조경공간 등에 액센트 조명을 시간대별로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 -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를 추구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정정사항 없음

가구번호	획지 번호	도면표시 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A1	-1,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차량동선의 최소화 •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대수의 100%를 지하주차장으로 설치 (단,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에 설치) •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동선과 분리 - 단지내 순환동선 구축 • 보행주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동선과 단지와의 접속부 	-

※ 지형도면 게재 생략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별내동 고시 제2020-18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내용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별내동장

허가번호	제2018-공유수면-14-2호	
점·사용의 목적	대지	
점·사용의 장소	별내동 2237-43, 2237-46번지	
점·사용의 면적	441㎡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김**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응달길 49
기타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허가번호	제2015-공유수면-9-1호	
점·사용의 목적	공작물(이동통신용 전주)설치	
점·사용의 장소	별내동 693-35	
점·사용의 면적	1㎡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엘*****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로 22 신평프라자 5층
기타사항		

허가번호	제2004-공유수면-2-2호	
점·사용의 목적	농지	
점·사용의 장소	별내동 2219-3	
점·사용의 면적	165㎡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이**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 23번길 6-2
기타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허가번호	제2017-공유수면-15-1	
점·사용의 목적	농지 진출입로	
점·사용의 장소	별내동 130-4	
점·사용의 면적	233㎡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김**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33, 호평두산위브 601호
기타사항		

허가번호	제2015-공유수면-15-2	
점·사용의 목적	대지	
점·사용의 장소	별내동 2219-4번지	
점·사용의 면적	396㎡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박**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덕릉로 1095
기타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허가번호	제2015-공유수면-19-2	
점·사용의 목적	농지 및 진입로	
점·사용의 장소	별내동 2219-5번지	
점·사용의 면적	198㎡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박**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덕릉로 1095
기타사항		

허가번호	제2019-공유수면-3-1호	
점·사용의 목적	농지	
점·사용의 장소	별내동 1482-15	
점·사용의 면적	99㎡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안**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 252-11번지
기타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허가번호	제2004-공유수면-1-2	
점·사용의 목적	농지	
점·사용의 장소	별내동 1542-9번지	
점·사용의 면적	298㎡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이**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81, 3104동 1303호(스위첸아파트)
기타사항		

허가번호	제2018-공유수면-5-1	
점·사용의 목적	농지	
점·사용의 장소	별내동 1482-3, 1482-16번지	
점·사용의 면적	340㎡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이**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 297-16번지
기타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허가번호	제2019-공유수면-2-1	
점·사용의 목적	농지	
점·사용의 장소	용암리 452-5, 452-8	
점·사용의 면적	88㎡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안**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34, 205동 1504호
기타사항		

허가번호	제2020-공유수면-12호	
점·사용의 목적	농경지 진출입로	
점·사용의 장소	별내면 청학리 223-7, 227-2, 227-4번지	
점·사용의 면적	21㎡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정**
	주 소	경기도 김포시 전원로 44, 206동 905호(운양동, 전원마을)
기타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허가번호	제2017-공유수면-15-1호	
점·사용의 목적	주차장	
점·사용의 장소	광전리 318-28번지	
점·사용의 면적	57㎡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장**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34, 109동 1501호(제기동 한신아파트)
기타사항		

허가번호	제2017-공유수면-14-1호	
점·사용의 목적	주차장	
점·사용의 장소	광전리 318-8, 319-29번지	
점·사용의 면적	55㎡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이**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9동 1501호(제기동 한신아파트)
기타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허가번호	제2017-공유수면-14-1호	
점·사용의 목적	주차장	
점·사용의 장소	광전리 318-28번지	
점·사용의 면적	57㎡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장**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34, 109동 1501호(제기동 한신아파트)
기타사항		

허가번호	제2017-공유수면-19-2호	
점·사용의 목적	이민혜	
점·사용의 장소	광전리 118-29번지	
점·사용의 면적	127㎡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이**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쌍용아파트 3702동 504호
기타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허가번호	제2005-공유수면-25-2호	
점·사용의 목적	대지	
점·사용의 장소	광전리 산 37-5번지	
점·사용의 면적	51㎡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김**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0번길 80-3. 1층(공릉동)
기타사항		

허가번호	제2017-공유수면-8-1호	
점·사용의 목적	농지	
점·사용의 장소	별내동 27-1번지	
점·사용의 면적	40㎡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이**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355
기타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허가번호	제2018-공유수면-8-1호	
점·사용의 목적	농경지	
점·사용의 장소	광전리 596-4번지	
점·사용의 면적	34㎡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이**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낙바위길 22
기타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0-1144호

지금·도농 6-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지금·도농 6-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23.

남양주시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지금·도농 6-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나.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7-64번지 일원
- 다. 사업면적: 64,917㎡ (건축연면적: 268,005.39㎡)
- 라. 사업시행자: 지금·도농 6-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마. 승인기관: 남양주시

2. 공개 개요

- 가. 공개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 내용(붙임1 참조)
- 나. 공개기간: 2020년 07월 23일 ~ 2020년 08월 07일(15일간)
- 다. 공개방법: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가. 제출기간: 공개기간 내(종료일 18:00까지)
- 나. 제출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다. 제출방법: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 의견 등록 또는 주민의견 제출서식(붙임2)을 작성하여 남양주시 도시재생과에 서면 제출 (heyhjk@korea.kr, 팩스: 031-590-8653)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시재생과(031-590-8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 2. 주민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0-1146호

화도푸른물센터 증설 및 수질강화를 위한 개선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562번지 일원 「화도푸른물센터 증설 및 수질강화를 위한 개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23.

남양주시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화도 푸른물센터 증설 및 수질강화를 위한 개선 민간투자사업
- 나.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562번지(화도 푸른물센터 부지 내)
- 다. 사업규모
 - 시설 현대화 : 제1화도 25,000㎡/일(제2화도로 이전 후 제1화도 공원화 예정)
 - 시설 개량 : 제2화도 18,000㎡/일
 - 증 설 : 8,000㎡/일(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반영된 증설물량)
- 라. 계획기관 : 남양주시

2. 공고·공람 기간 및 장소

- 가. 공고·공람기간 : 2020. 07. 23. ~ 2020. 08. 19.
- 나. 공람장소 :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남양주시 별내2로 88)
- 다. 공람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고서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가. 설명회 개최 일시 : 2020. 07. 31.
- 나. 설명회 개최 장소 : 화도 푸른물센터 홍보관 2층 대회의실(화도읍 폭포로 562번지)
 - * 주민설명회 시 코로나19로 인한 이격거리 준수를 위하여 사전준비가 필요하오니, 주민설명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유선(하수처리과 : 031-590-4671)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민의견 제출

- 가. 제출기간 : 공람완료 후 7일 이내 까지
- 나. 제출처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하수처리과(031-590-4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0-1150호

영빈묘 인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주민공람·공고 (소로2-263호선,2-264호선)

1. 우리시 진접읍 장현리 193-1번지 및 203-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 및 고층 민원을 해소하고자 입안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7. 23.

남양주시장

1.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및 사유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
 - 가) 결정(안)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263	9	집산도로	58.8	진접읍 장현리 산25-35	진접읍 장현리 193-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264	8	집산도로	170.8	진접읍 장현리 203-3	진접읍 장현리 207-6	일반도로	-	-	

나) 결정(안)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소로 2-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B=9m, L=58.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편의 증진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소로 2-2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B=8m, L=170.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편의 증진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공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당직실
 - 평일 주간(AM 9:00 ~ PM 6:00)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031-590-2379)
 - 주말, 공휴일 : 남양주시청 당직실(031-592-4900)
3.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초일불산입)
4. 기타사항 : 관계도서 및 세부내용을 위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0-1157호

남양주 호평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 공고

우리시 평내동 660-6번지 일원 장기간 미개발로 인하여 도시 활성화에 저해되고 있는 사업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주민의 문화 및 여가·상업기능 제공, 고층 건물의 랜드마크 건립을 위한 남양주 호평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장

1. 금회 변경 개요

가. 위 치 : 남양주시 평내동 660-6번지 일원

나. 주요 변경내용 :

- 상업용지 5-7BL : 층수계획 폐지 (12층→제한 없음), 건축한계선 변경 (2m→3m)

※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하며,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 당직실,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도시건축과)

평일(AM 9:00 ~ PM 6:00)	야간, 주말, 공휴일
•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 (☎ 031-590-8956) •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 031-590-6940)	• 남양주시청 당직실 (☎ 031-590-2222)

3.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의견 제출을 원할 경우 열람 기간에 열람 장소에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0-1160호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연공원법」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5항에 따라 남양주시 군립공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 12조를 반영하며 그 밖에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자구 수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및 연임 규정 신설

- 1) 공원관리과장을 일반위원 지명 대상에서 제외 (제8조에서 공원관리과장을 간사로 지정)
 - (종전) “일반위원은 각 실·국장과 공원관리과장” ⇒ (변경) “일반위원은 각 실·국장” (안 제2조3항)
- 2)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를 반영
 - (종전)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 (변경)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다” (안 제2조3항)

- 3) 「자연공원법」 제9조 2항의 후단의 신설규정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후단이 신설되어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신설
- (신설)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한다.

(안 제2조제6항)

- 4)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 5항을 반영하여 위촉위원 및 특별위원의 연임을 규정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안 제3조)

나. 간사에 관한 규정 수정

1) (종전)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공원관리과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된다.

(변경)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관리 담당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안 제8조제1항, 2항)

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자구 수정 등

1)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식 한자어 및 정비대상 용어 정비

- 일본식 한자어

- (종전) “당해” ⇒ (변경) “해당” (안 제2조)

- (종전) “회무를 통리하며” ⇒ (변경)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안 제4조제1항)

- (종전) “유고시” ⇒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안 제4조제2호)

3. 개정조례안 : 별첨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4. 의견제출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 [참조 : 남양주시청 공원관리과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 팩스 : 031-590-2797, 전자메일 : jhlim24@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기획팀(☎031-590- 4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실·국장과 공원관리과장”을 “실·국장”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반영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 중 “한다”를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 제목 “(간사 등)”을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를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원관리 부서의 과장이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공원관리과
입 안 자	담당관 · 과장 직위 · 성명	공원관리과 김학근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공원관리기획팀장 송종일
	담당자 성명 · 전화	임지향 031-590-4743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조직) ①·② (생 략)</p> <p>③일반위원은 각 실·국장과 공 원관리과장 및 공원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00.0 4.22, 2001.11.12, 2003.02.04, 2005. 03.10., 2006.10.19, 2007. (생 략)</p> <p>④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p> <p>1.당해 공원 지역을 관할하는 읍 · 면 · 동장</p> <p>2.당해 공원구역 면적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p> <p>⑤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 원이 된다.</p> <p><신 설></p> <p>제3조(임기) 제2조제3항에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제2호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2조(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실·국장 ----- -----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p> <p>2007. (현행과 같음)</p> <p>④-----.</p> <p>1.해당 ----- -----</p> <p>2.해당 ----- ----- -----</p> <p>⑤----- 해당 ----- -----.</p> <p>⑥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한다.</p> <p>제3조(임기) ----- ----- -----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공원관리과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원관리 부서의 과장이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0-1161호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공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 건설공사, 남양주시5차]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시행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 건설공사, 남양주시5차, <20수용0362호>』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보를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보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23.

남양주시장

1. 사 업 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공고기간 : 2020. 7. 23. ~ 2020. 8. 7. (15일간)
4. 재결서 수령장소 :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5.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비고
1	차승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14길 65 (신림동)	공시송달 대상
2	김창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1 105동906호(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3	김창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1 105동 906호(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4	호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28-1 미라보타운 507호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로건설과(☎031-590-2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와부읍 공고 제2020-141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와부읍장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m ²)	소유자	건축허가(신고)현황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143	3.0	김광진	2020-도시건축과 -건축허가-68호 (2020.07.20.)
	합 계	3.0	-	
도로지정 사유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143번지 외 1필지 상의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 등 상세한 사항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진접읍 공고 제2020-167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진접읍장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m ²)	소유자	건축허가(신고)현황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87	118	원경모	2020-도시건축과 신축신고-62 (2020.07.17.)
			김수홍	
	합 계	118	-	
도로지정 사유	진접읍 부평리 87번지 상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진접읍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진접읍 공고 제2020-168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진접읍장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m ²)	소유자	건축허가(신고)현황
남양주시 진접읍 진별리	284-5	2	임은홍	2020-도시건축과 신축신고-64 (2020.07.22.)
	합 계	2	-	
도로지정 사유	진접읍 진별리 284-5번지 상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진접읍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화도읍 공고 제2020-103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화도읍장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	소유자	건축허가(신고)현황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100-69	8	강은○	2018-도시건축과 -건축허가-180호 (2018.11.13.)
	산100-70	13	(주)정우개발	
	산100-71	81	(주)정우개발 (주)호재개발 강은○,김진스 조순하,이은○	
	산100-82	128	(주)호재개발 강은○,김진스 조순하,이은○	
	산100-86	1	강은○, 김진스	
	합 계	231		
도로지정 사유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100-70번지 상의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화도읍사무소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화도읍 공고 제2020-1140호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고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수동면 입석리 산30-4번지 일원에 임야를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복구명령 하였으나, 복구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55조제 규정에 따라 고발하고자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사전통지를 불법 행위자에게 고발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화도읍장

- 처분제목 :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고발 사전통지
- 처분근거 :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제55조
- 처분내용

행위자	위 치	행위내용	면적(m ²)	행위일시
정오석	수동면 입석리 산30-4	컨테이너 설치	64m ²	2020년 2월 10일경

- 공시송달사유 : 기타(송달 불가능)
- 공고기간 : 2020. 07. 23. ~ 2020. 08. 06.(14일간)
- 공고 및 게시장소 : 시보 및 게시판, 홈페이지
- 기타사항 : 「산지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서 없이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고발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0-69호

도로지정(변경)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 하고 공고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호평동장

◎ 지정(변경)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m ²)	소유자현황	건축허가 현황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45-1	323.0	이경*	2019-도시건축과 신축신고- 16호 (2019.12.02.)
	산45-18	98.0	윤영*	
	합 계	421	-	
도로지정 사유	남양주시 호평동 산45-1번지 상의 건축신고(변경)에 따른 도로의 위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변경) 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0-70호

도로지정(변경)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 하고 공고 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호평동장

◎ 지정(변경)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m ²)	소유자현황	건축허가 현황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45-1	149.0	이경*	2019-도시건축과 신축신고- 9호 (2019.08.05.)
	산45-11	181.0	(주)경성	
	555-4	63.0	운영* 이경* 권상*	
	555-10	148.0	(주)경성	
	555-11	604.0	(주)경성 운영*	
	합 계	1,145.0	-	

도로지정 사유 남양주시 호평동 산 45-11번지 상의 건축신고(변경)에 따른 도로의 위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변경)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0-75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호평동장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m ²)	소유자현황	건축허가 현황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69-1	58.0	이 중 * 문 수 *	2019-도시건축과 신축허가-40호 (2017.11.30.)
	합 계	58.0	-	
도로지정 사유	남양주시 호평동 산69-1번지 상의 건축허가(변경)에 따른 도로의 위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 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0-76호

도로지정(변경)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변경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호평동장

● 지정(변경)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m ²)	소유자현황	건축신고 현황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45-28	143.0	운영*	2019-도시건축과 건축신고-19호 (2019.04.03.)
	합 계	143.0	-	
도로지정 사유	남양주시 호평동 45-28번지 외2필지 상의 건축신고(변경)에 따른 도로의 위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변경)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0-77호

도로지정(변경) 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변경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호평동장

● 지정(변경)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m ²)	소유자현황	건축신고 현황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45-18	287.0	운영*	2019-도시건축과 건축신고- 4호 (2019.06.04.)
	합 계	287.0	-	
도로지정 사유	남양주시 호평동 산45-18번지 외1필지 상의 건축신고(변경)에 따른 도로의 위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변경)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0-78호

도로지정(변경)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 변경하고 공고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호평동장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m ²)	소유자현황	건축신고 현황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555-6	335.0	권상*	2019-도시건축과 신축신고- 20호 (2019.12.02.)
	555-8	108.0		
	555-7	1.0	권상*	
	555-15	48.0	이경*	
	571-10	101.0		
	555-9	19	운영* 박문* 이상* 권상*	
	산45-18	164	운영*	
	합 계	776	-	
도로지정 사유	남양주시 호평동 555-6번지 상의 건축신고(변경)에 따른 도로의 위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변경) 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0-79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하고 공고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호평동장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m ²)	소유자현황	건축허가 현황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571-2	1.0	운영*	2020-도시건축과 신축허가- 2호 (2020. 02.24.)
	571-3	82.0		
	합 계	83.0	-	
도로지정 사유	남양주시 호평동 572-2번지 외4필지 상의 건축허가(변경)에 따른 도로의 위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변경) 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0-80호

도로지정(변경) 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 변경하고 공고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호평동장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m ²)	소유자현황	건축신고 현황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555-1	214.0	권상*	2019-도시건축과 건축신고-27호 (2019.12.02.)
	555-2	14.0		
	555-3	122.0		
	합 계	350.0	-	
도로지정 사유	남양주시 호평동 555-6번지 외6필지 상의 건축신고(변경)에 따른 도로의 위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변경) 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제2020-106호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 소유자(사용자)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금곡동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대상자 및 내용

소유자	물건 소재지	행위자	위법내용			행위 연도	공시송달 사유
			위법유형	위법용도, 위법행위	면적(m ²)		
이성*	일패동 341-1	주춘*	신축	제2종근생(사무실)	27.0	20020.02	폐문부재
				창고시설(창고)	18.0		
				창고시설(창고)	9.0		
				창고시설(비가림시설)	33.0		

4. 공고기간 : 2020. 07. 23. ~ 2020. 08. 06.(14일간)

5. 공고장소 : 시군구보,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유의사항

-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계신 일패동 341-1번지 상에서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어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 합니다.
-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한 의견제출서를 본 문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별도 고지(예정)하는 원상복구 기간 내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아니 할 경우 「건축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08조 또는 제111조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다른 법률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법(제소기간)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청구, 사건 진행사항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대상자의 관계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위(건축)허가 취소 처분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031-590-1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금곡동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0-43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다산1동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점용의 목적	도시가스 배관매설	점용기간	2020. 07. 17. ~ 2029. 12. 31.
점용의 장소	다산동 6263번지 (다산동 6052-1번지 앞)	점용면적	계속점용 1.8㎡
			일시점용 28㎡
점용물의 종류	도시가스관	공사기간	2020. 07. 17. ~ 2020. 08. 10. (기간중 7일)
공사 방법	노면굴착시공	굴착 시 교통대책	신호수 배치 및 통제시설물 설치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원상복구	도로굴착	당일굴착 당일복구
점용자의 주소 · 성명	(주)미 성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28가길 122-8	그 밖의 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점용의 목적	열배관 인입공사	점용기간	2020. 07. 20. ~ 2029. 12. 31.
점용의 장소	다산동 6255번지 (다산동 6019, 6021-1번지 앞)	점용면적	계속점용 278.62㎡
			일시점용 80.95㎡
점용물의 종류	열배관	공사기간	2020. 07. 20. ~ 2020. 08. 31. (기간중 30일)
공사 방법	노면굴착시공	굴착 시 교통대책	신호수 배치 및 통제시설물 설치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원상복구	도로굴착	당일굴착 당일복구
점용자의 주소 · 성명	별내에너지(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391	그 밖의 사항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점용의 목적	도시가스관 보수 공사	점용기간	
점용의 장소	다산동 4338-61번지 (다산동 4302-52번지 앞)	점용면적	일시점용 2.8㎡ (1.4m×2m)
점용물의 종류	도시가스관	공사기간	2020. 07. 20. ~ 2020. 08. 10. (기간중 1일)
공사 방법	노면굴착시공	굴착 시 교통대책	신호수 배치 및 통제시설물 설치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원상복구	도로굴착	당일굴착 당일복구
점용자의 주소 · 성명	(주)에스코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23(용답동249- 8)	그 밖의 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점용의 목적	도시가스관 철거 공사	점용기간	
점용의 장소	다산동 4026-12번지 (다산동 4026-16번지 앞)	점용면적	일시점용 7㎡ (1.4m×5m)
점용물의 종류	도시가스관	공사기간	2020. 07. 20. ~ 2020. 08. 10. (기간중 1일)
공사 방법	노면굴착시공	굴착 시 교통대책	신호수 배치 및 통제시설물 설치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원상복구	도로굴착	당일굴착 당일복구
점용자의 주소·성명	(주)에스코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23 (용답동249-8)	그 밖의 사항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점용의 목적	전기공급시설 관로공사	점용기간	2020. 07. 16. ~ 2020. 12. 31.
점용의 장소	다산동 6263번지 (다산동 6130-3번지 앞)	점용면적	계속점용 7.662㎡
			일시점용 14.41㎡
점용물의 종류	전기공급시설 관로	공사기간	2020. 07. 16. ~ 2020. 08. 16. (기간중 2일)
공사 방법	노면굴착시공	굴착 시 교통대책	신호수 배치 및 통제시설물 설치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원상복구	도로굴착	당일굴착 당일복구
점용자의 주소·성명	한국전력공사 남양주지사장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53	그 밖의 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점용의 목적	전주 이설	점용기간	2020. 07. 17. ~ 2020. 12. 31.
점용의 장소	수석동 산2-109번지	점용면적	전주 1분
			일시점용 48㎡ (4m×12m)
점용물의 종류	전주	공사기간	2020. 07. 17. ~ 2020. 08. 10. (기간중 7일)
공사 방법	노면굴착시공	굴착 시 교통대책	신호수 배치 및 통제시설물 설치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원상복구	도로굴착	당일굴착 당일복구
점용자의 주소·성명	한국전력공사 남양주지사장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53	그 밖의 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별내동 공고 제2020-7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별내동장

- 제 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사전통지
- 근 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행정절차법」 제21조
- 공고기간 : 2020.7.23. ~ 2020.8.6.(14일간)
- 송달대상 : 김위○, 박선○, 김현○
- 송달내용

위 치	위반행위자		위 법 행 위 내 용					
	행위자	토지(건축) 소유자	위법내용	위법용도	구조	규모 (㎡)	행위일시	관련 지번
별내동 산202-3 산202-7 9 2261-24 2261-25	한희○	김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2길] 박선○ 박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30-5] 국(국토교통부)	신축	창고	철파이프조	85	1995년경	산202-3 산202-7 9 2261-24 2261-25
			신축	비가림 시설	철파이프조	15		2261-25
			신축	창고	컨테이너	18	2016년경	산202-7 9

위 치	위반행위자		위 법 행 위 내 용					
	행위자	토지(건축) 소유자	위법내용	위법용도	구조	규모 (㎡)	행위일시	관련 지번
별내동 86-14 81-29 81-18 12-4	봉해○	봉해○ 국토교통부 남양주시	신축	창고	컨테이너	12	2004년경	81-29
			신축	창고	철파이프조	100		86-14 81-18
	김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4바길]		신축	창고	철파이프조	56	2016년경	12-4
			물건적치	가전제품 적치	-	135		

- 게시장소 : 시정홍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별내행정복지센터

남 양 주 시 보

제1844호

남양주시 별내동 공고 제2020-7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2020. 7. 23.

남양주시 별내동장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2. 근 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고기간 : 2020.7.23. ~ 2020.8.6.(14일간)
4. 송달대상 : 박병○, 김정○, 이영○
5. 송달내용

위 치	위반행위자		위 법 행 위 내 용					관련 지번
	행위자	토지(건축) 소유자	위법내용	위법용도	구조	규모 (㎡)	행위일시	
별내동 2227-1	양정○	신상○	용도변경	창고	일반철골구조	352	2019년경	
	박병○		용도변경	창고	일반철골구조	143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18길 29]		증축	화장실	경량판넬	6		

위 치	위반행위자		위 법 행 위 내 용					관련 지번				
	행위자	토지(건축) 소유자	위법내용	위법용도	구조	규모 (㎡)	행위일시					
별내동 2	최동○	홍삼○	신축	사무실	컨테이너	18	2019년경					
		김경○										
		김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23나길]							신축	휴식공간	경량판넬	17
		김명○							신축	창고	철파이프조	42
		이영○							신축	창고	컨테이너	27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외성2길]							공작물 설치	계근장	철구조물	27
김용○	공작물 설치	고물상 부지	-	1,618								
김화○												
김진○												
		김연○										

6. 게시장소 : 시정홍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별내행정복지센터